

「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·김민성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·소진혁·이상호·이지연·
추은희·허민근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, 위기청소년·청소년부모·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2)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3)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4) 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5)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 제6조
- 2)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6. 4. 8. ~ 4. 14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, 위기청소년·청소년부모·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에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, 이원화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조례 「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」 및 「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」를 통·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-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·은둔 청소년과 같이 발굴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교육청,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해야 할 것이며,
- 기존 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, 전문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높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